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 측정항목6, 비고 19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별표 2] 측정항목6, 비고 7에서 「유아교육법」 제24조 제3항의 고시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유아교육비·보육비 이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됨.

이에 따라, 법률 정합성 제고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을 「유아교육법」 제24조 제3항의 고시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도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범위에서 부담하되,”를 “범위에서”로, “부담한다”를 “부담하되,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효기간”이라 한다)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의 고시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도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u>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 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u>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 ----- ----- <u>법</u> <u>위에서</u> ----- ----- ----- <u>부담하되,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효기간”이라 한다)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의 고시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도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3562